

예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- 검토 보고 -

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군세감면 조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함 (안 제1조)
- “음성나환자집단촌”의 명칭을 “한센정착농원”으로 조문정리 (안 제4조)
-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, 시설물 중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(재산세, 종합토지세 50%감면)에 대하여 감면범위 확대 신설 (안 제9조제2항)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에 대한 감면문구 수정 (안 제12조제1항)
-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“신고” 의무에서 “통보” 의무로 조문 정리 (안 제15조의2, 제15조의3)

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9조 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
- 시·군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설치목적의 내용 추가와 명칭변경 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
- 지방세제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정리와 형평에 맞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군조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- 앞으로 납세자에게 좀더 많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